규제영향분석서

#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

<목 차>

1.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
2.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
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| 소관부처 | 산업통상자원부 | 작성자 | 이름 | 진희철 |
| | 담당부서(과) | 전기통신제품안전과 | | 직급 | 사무관 |
| | 국장 | 김상모 | | 연락처 | 043-870-5445 |
| | 과장 | 이응로 | | 이메일 | chinhc@mail.go.kr |


2023. 04. 05. 작성

정 책 책 임 자 직 위　　성 명 (서 명)

## 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<br>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법률 제34조의2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23.04.17~2023.06.16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규제의<br>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<br>및 정부개입<br>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○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,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「전안법」개정 완료(‘22.10.18.)<br>○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,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,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(～‘23.10.19.)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○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 규정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<br>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○ 피규제자: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/시험기관<br>○ 이해관계자: 국민(소비자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<br>전기용품 인증/시험기관</td><td>22개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9.도입목표<br>및 기대효과</td><td colspan="3">○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 마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을 규정하는 제도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규제의<br>적정성</td><td rowspan="5">10.비용편익분석<br>(단위:백만원)</td><td></td><td>비용</td><td>편익</td><td>순비용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 이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정성분석</td><td>지정신청,<br>수수료</td><td>지정을 통한<br>기관 신뢰성<br>확보</td><td>지정신청,<br>수수료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3">○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 마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을 규정하는 제도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11.영향평가<br>여부</td><td colspan="2"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 rowspan="2">12.규제일몰제</td><td>대분류</td><td colspan="2">소분류</td></tr>
<tr><td>일몰설정<br>예외기준</td><td colspan="2">1.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</td></tr>
</table>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2.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·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| 해당 |
| | | | 3.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| 해당 |
| | | 경제규제 여부기준 | 4.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| |
| | | | 5.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| |
| | | 일몰설정 세부기준 | 6.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| |
| | | | 7.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| |

| 일몰설정여부 | 일몰조문 | 연장여부 |
|---|---|---|
| 미설정 | | |
| **일몰유형** | **일몰설정기간** | **일몰주기** |
| | | |

| | |
|---|---|
| 13.우선허용·사후 규제 적용여부 | 해당없음 |

| 14.비용감축제 (단위:백만원) | 적용여부 | 비용 | 편익 | 연간균등순비용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미적용 | 0 | 0 | 0 |

| | |
|---|---|
| 15.규제정비 계획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) |

<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4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등)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. | 제14조(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) ① 안전인증기관·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(이하 "안전인증기관등"이라 한다)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,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, 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. |
| ②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 2 또는 별표 5의 제품분류별, 품목별,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. | ②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의2,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제품분류별, 품목별,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. |
| 제15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수수료) ①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 | 제15조(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수수료) ①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 |
| 1. · 2. (생 략)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|
| ② · ③ (생 략) |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16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 | 제16조(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등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 |
|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시 평가방법 |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하여 필요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에 대하여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(국가기술표준원 공고)」에 따른다. | 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
| 제18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)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br>1.·2. (생 략)<br>② (생 략) | 제18조(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) ① 안전인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br>1.·2.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 |

## 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,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「전안법」 개정 완료 (‘22.10.18.)

□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,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,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(~‘23.10.19.)

#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# ① 대안의 비교

o 규제대안의 내용

| | | |
|---|---|---|
| 규제대안1 | 대안명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|
| | 내용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마련 |
| 규제대안2 | 대안명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미도입 |
| | 내용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미마련 |

o 규제대안의 비교

| 구분 | 장점 | 단점 |
|---|---|---|
| 규제대안1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마련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마련으로 규제 도입 |
| 규제대안2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미마련으로 업계 자율성 확보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미마련으로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 초래 |

##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| 일시 · 장소 · 방법 | 제시의견 | 조치결과 |
|---|---|---|---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###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을 참고하고 안전성 검사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●보완하여 안전성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

## 3. 규제목표

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제 불확실성 해소

## Ⅱ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절차를 준용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| |
|---|---|---|
| 기술 | 경쟁 | 중기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부재하여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,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
- 경쟁영향평가

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/기관 등 법인/단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

|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| 해당 여부 |
|---|---|
| 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| 해당없음 |
| 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| 해당없음 |
| 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| 해당없음 |
| 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| 해당없음 |

- 중기영향평가

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/기관 등 법인/단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| | | |
|---|---|---|
| ① 규제 영역 | | 품질안전 |
| ② 규제 방식 | | 기술설정 |
| ③ 예비분석모델 | | 정성모델 |
| | 판단 근거 | 규제 대상 집단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또는 전기용품 인증/시험기관 등이며,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규모가 다양하고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.<br>이에 동 법의 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|
| ④ 대상 업종 | |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시험/인증기관 등 |
| ⑤ 예비분석내용 | | ○ 유사사례 분석<br>- 국내외 유사입법례를 검토 시 인증 업무를 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<br><br>○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은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,<br>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도입하는 사항임 |
| ⑥ 차등화적용 여부 | | ○ 이에 따라, 재사용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시험/인증기관 중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과 같이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불필요 |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. 업계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, 해당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. 또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

- 일몰설정 여부

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없음

- **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**

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

| 분류 | 적용여부 | 적용내용/미적용사유 |
|---|---|---|
| 포괄적 개념 정의 |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유연한 분류 체계 |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네거티브 리스트 |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사후 평가관리 |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규제 샌드박스 |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
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### o 해외사례

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음

| 관련 국제기준 | 일치여부 | 불일치 사유(불일치 시에 한함) |
|---|---|---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### o 타법사례

최초 목적으로 사용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 비교하기 힘듬. 다만,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절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 동 법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

## 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0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3 | 2023 | 10 | 4.5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| 규제대안 1 :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향집단 |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| 직접 | | | |
| | 간접 |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·소상공인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| | | | |
| 정부 | | | | |
| 총 합계 | | | | |
| 기업순비용 | | | 연간균등순비용 | |

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 1. 규제의 순응도

####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실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

#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#### o 행정적 집행가능성

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및 실무 회의 결과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종합해볼 때 집행 가능함

#### o 재정적 집행가능성

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

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 1. 추진 경과

산·학·연 전문간들이 참여한 간담회(‘23.2.15.) 및 업계 간담회(‘23.3.29.) 실시

### 2. 향후 평가계획

-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(‘23.4.17.~‘23.6.16)
- 자체규제심사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실시
-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실시

### 3. 규제 정비계획

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"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"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완화

| 법령명 | 규제조문 | 규제 폐지·완화 내용 | 추진 일정 |
|---|---|---|---|
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| 별표 4 제1호사목 32) |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5 제1호사목 16)으로 이동 | `23.3.20. 공포 |

### 4. 종합결론

○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한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

○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중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

○ 기업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

| 별 첨 |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|
|---|---|

## 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 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3 | 2023 | 10 | 4.5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| 규제대안1 :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향집단 |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| 직접 | | | |
| | 간접 |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| | | | |
| 정부 | | | | |
| 총 합계 | | | | |
| 기업순비용 | | | 연간균등순비용 | |

|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|
|---|
| ○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 마련, 지정 수수료, 지정심사, 지정서 재교부 등을 규정하는 제도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|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### <규제대안1 :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>

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

| | |
|---|---|
| (정량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 인증/시험기관 |
| 활동제목 | 지정신청 |
| 비용항목 | 기타 |
| 비용 | 0 |
| 일시적/반복적 | 일시적 |
| 산식 | 지정신청 수수료*피규제자수(1451520*22) |
| 근거설명 | ○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22개 기관이 '''23년 동시에 신청한다고 가정(신청 수수료 5만원)<br><br>○ 외부 심사원 2명이 2일에 걸친 시험을 하는 경우, '22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총 1,401,520원 심사수수료 발생 |

□ 직접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인증/시험기관 |
| 활동제목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|
| 편익항목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○ "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"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해당 기관의 대외 신인도 향상 |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|
| 활동제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○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,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|

□ 간접비용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인증/시험기관 |
| 활동제목 | 지정신청 |
| 비용항목 | 업무수행체계 구축 |
| 일시적/반복적 | 일시적 |
| 근거설명 | ㅇ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업무수행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존 조직을 검사 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노력 발생 |

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:

□ 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 |
| 활동제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,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|

③정부 :

□ 비용

| | |
|---|---|
| (정량)영향집단명 | 정부 |
| 활동제목 |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심사 |
| 비용항목 | 행정부담 |
| 비용 | 0 |
| 일시적/반복적 | 일시적 |
| 산식 | 23년 동시 신청(최대 피규제자수)*회당 투입일*회당 투입인원*출장비(서울기준)(22*2*1*68200) |
| 근거설명 | ㅇ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희망하는 기관/단체의 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/시험 기관을 기준으로 최대 22곳이 한 번에 신청한다고 가정<br><br>ㅇ내부 인원 1명이 이틀 출장을 통해 해당 기관의 지정심사<br><br>ㅇ서울기준으로 하루 출장비는 68200원 |

□ 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정부 |
| 활동제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ㅇ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한 제품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므로 국민의 안전 확보 기대 |

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□ 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일반 소비자 |
| 활동제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,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|

## 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 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제3조, 제56조의2, 제56조의3, 제57조, 제58조, 제59조, 별표 3의2, 별표 23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시행규칙 제3조, 제20조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23.04.17~2023.06.16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규제의 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○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,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「전안법」 개정 완료('22.10.18.)<br>○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,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기준,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 (~'23.10.19.)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○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 등을 규정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○ 피규제자: 재사용전지 제조업체<br>○ 이해관계자: 국민(소비자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재사용전지 제조업체</td><td>14</td></tr>
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국민(소비자)</td><td>약 5천만명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9.도입목표 및 기대효과</td><td colspan="3">○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구체적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규제의 적정성</td><td rowspan="5">10.비용편익분석<br>(단위:백만원)</td><td></td><td>비용</td><td>편익</td><td>순비용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 이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정성분석</td><td>안전성검사 신청 및 표시</td><td>안전한 제품임을 홍보</td><td>안전성검사 신청 및 표시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3">○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구체적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</td></tr>
<tr><td>11.영향평가 여부</td><td colspan="3">
<table>
<tr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12.규제일몰제</td><td colspan="3">
<table>
<tr><th>대분류</th><th colspan="2">소분류</th></tr>
<tr><td>일몰설정 예외기준</td><td>1.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</td><td>미해당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2.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·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| 해당 |
| | | | 3.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| 해당 |
| | | 경제규제 여부기준 | 4.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| |
| | | | 5.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| |
| | | 일몰설정 세부기준 | 6.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| |
| | | | 7.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| |

| 일몰설정여부 | 일몰조문 | 연장여부 |
|---|---|---|
| 미설정 | | |
| **일몰유형** | **일몰설정기간** | **일몰주기** |
| | | |

| | |
|---|---|
| 13.우선허용·사후 규제 적용여부 | 해당없음 |

| 14.비용감축제 (단위:백만원) | 적용여부 | 비용 | 편익 | 연간균등순비용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미적용 | 0 | 0 | 0 |

| | |
|---|---|
| 15.규제정비 계획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) |

<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3조(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) ①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,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(이하 "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"이라 한다)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. | 제3조(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) ① 규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,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(이하 "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"이라 한다)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4.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의2와 같다. |
| ② ~ ⑤ (생 략)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제56조의2(안전성검사의 신청 등)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<br>② 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신청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,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.<br>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br>④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. |
| <신 설> | 제56조의3(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)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시스템에 대한 검사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는 그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.<br>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. |
| 제57조(안전인증등의 표시)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,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**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**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,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**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,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**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. | 제57조(안전인증등의 표시)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,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**,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안전성검사를 한 자 및 받은 자는**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,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**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, 규칙 제55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의 표시,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**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. |
| 제58조(표시시기)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,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**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는**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,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 | 제58조(표시시기)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,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**,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등의 표시는**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,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. |
| 제59조(표시방법) ①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,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**및** | 제59조(표시방법) ①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, 안전확인신고의 표시**, 공** |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<br><br>1. 안전인증 · 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인증 · 안전확인신고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,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2.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,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br>3. (생 략)<br>② (생 략)<br><br><신 설></td><td>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<br>1. 안전인증 · 안전확인신고 · 안전성검사 마크는 안전인증 · 안전확인신고 · 안전성검사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,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2.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,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br>3.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<br><br>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[별표 3의2] <신설><br><br>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<br><br>세부품목(제3조 관련)<br><table><tr><th>품목</th><th>세부품목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1. 재사용전지</td><td>① 재사용전지모듈<br>② 재사용전지시스템(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)</td></tr><tr><td>비고:<br>1.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br>2. 일상생활에서 전지(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)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,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<br>3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[별표 23]<br><br>**기타 필요한 표시**(제57조 관련)<br><br>1.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·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<br>2.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번호<br>3. 모델명<br>4.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(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)<br>5.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(예 : 제조년월,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)<br>6. 애프터서비스 연락처(실질적으로 A/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)<br>7.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<br><br>비고 :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, 안전확인신고등의 표 | [별표 23]<br><br>**기타 필요한 표시**(제57조 관련) <개정><br><br>1.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·공급자적합성확인·안전성검사의 마크<br>2.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·안전성검사 번호<br>3. 모델명<br>4.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(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)<br>5.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(예 : 제조년월,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)<br>6. 애프터서비스 연락처(실질적으로 A/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)<br>7.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<br><br>비고 :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,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,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,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. | 시등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있는 경우,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. |

## 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,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「전안법」 개정 완료(‘22.10.18.)

□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,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,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(～‘23.10.19.)

#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# ① 대안의 비교

o 규제대안의 내용

| | | |
|---|---|---|
| 규제대안1 | 대안명 |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|
| | 내용 |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 구체화 |
| 규제대안2 | 대안명 |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미도입 |
| | 내용 |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 미구체화 |

o 규제대안의 비교

| 구분 | 장점 | 단점 |
|---|---|---|
| 규제대안1 |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|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 구체화로 규제 도입 |
| 규제대안2 |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 미구체화로 업계 자율 부여 |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 미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 초래 |

##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| 일시 · 장소 · 방법 | 제시의견 | 조치결과 |
|---|---|---|---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###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

## 3. 규제목표

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

## Ⅱ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당제품의 신뢰성 확보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| |
|---|---|---|
| 기술 | 경쟁 | 중기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부재하여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,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
- 경쟁영향평가

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

|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| 해당 여부 |
|---|---|
| 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| 해당없음 |
| 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| 해당없음 |
| 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| 해당없음 |
| 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| 해당없음 |

- 중기영향평가

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| | | |
|---|---|---|
| ① 규제 영역 | | 품질안전 |
| ② 규제 방식 | | 기술설정 |
| ③ 예비분석모델 | | 정성모델 |
| | 판단 근거 | 규제 대상 집단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이며,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규모가 다양하고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. 이에 동 법의 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|
| ④ 대상 업종 | |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|
| ⑤ 예비분석내용 | | ○ 유사사례 분석<br>- 유사입법례(동 법에 따른 안전인증/안전확인시험에 따른 수수료 포함)를 검토 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|
| ⑥ 차등화적용 여부 | | ○ 이에 따라,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불필요 |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통해 안전성 해당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. 업계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, 해당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.

- 일몰설정 여부

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없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

| 분류 | 적용여부 | 적용내용/미적용사유 |
|---|---|---|
| 포괄적 개념 정의 | |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유연한 분류 체계 | |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네거티브 리스트 | |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사후 평가관리 | |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| 규제 샌드박스 | |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|

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### o 해외사례

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음

| 관련 국제기준 | 일치여부 | 불일치 사유(불일치 시에 한함) |
|---|---|---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### o 타법사례

최초 목적으로 사용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 비교하기 힘듬. 다만,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은 동 법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시험 제도와 유사하게 기준을 마련함

## 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0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3 | 2023 | 10 | 4.5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| 규제대안 1 :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향집단 |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| 직접 | | | |
| | 간접 |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| | | | |
| 정부 | | | | |
| 총 합계 | | |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기업순비용 | | 연간균등순비용 | |

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 1. 규제의 순응도

o **피규제자 준수 가능성**

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실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

#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**행정적 집행가능성**

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및 실무 회의 결과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종합해볼 때 집행 가능함

o **재정적 집행가능성**

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

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 1. 추진 경과

산·학·연 전문간들이 참여한 간담회(‘23.2.15.) 및 업계 간담회(‘23.3.29.) 실시

### 2. 향후 평가계획

-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(‘23.4.17.~‘23.6.16)
- 자체규제심사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실시
-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실시

### 3. 규제 정비계획

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"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"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완화

| 법령명 | 규제조문 | 규제 폐지·완화 내용 | 추진 일정 |
|---|---|---|---|
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| 별표 4 제1호사목 32) |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5 제1호사목 16)으로 이동 | `23.3.20. 공포 |

### 4. 종합결론

○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한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

○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중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

○ 기업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

| 별 첨 |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|
|---|---|

## 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 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3 | 2023 | 10 | 4.5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| 규제대안1 :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향집단 |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| 직접 | | | |
| | 간접 |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| | | | |
| 정부 | | | | |
| 총 합계 | | | | |
| 기업순비용 | | | 연간균등순비용 | |

|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|
|---|
| ○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구체적 지정, 안전성검사,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|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>

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

<table>
<tr><td>(정량)영향집단명</td><td>재사용전지 제조업자</td></tr>
<tr><td>활동제목</td><td>안전성검사 신청 및 수수료</td></tr>
<tr><td>비용항목</td><td>기타</td></tr>
<tr><td>비용</td><td>0</td></tr>
<tr><td>일시적/반복적</td><td>반복적/연간균등</td></tr>
<tr><td>산식</td><td>사용후전지 개수(예상)*검사비용(5646*469040)<br>연간 평균 모델 수*최대 검사비용(14*43500000)</td></tr>
<tr><td>근거설명</td><td>○ 환경부(환경공단)는 '23년~'30년 연 평균 52437개의 발생을 예측하고 이 중 재사용을 위한 회수는 '같은 기간 연 평균 5646개로 예측<br><br>○ 주요 검사비용으로는 제품별 용량검사로 469040원(제주테크노파크 산업화센터)이 예측되며, 모델별 랙 BMS 검사비용은 최대 43500000원(전기용품 인증기관)임<br><br>
<table>
<tr><td colspan="8">< 주요 검사비용 예시(1개 팩 기준) 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검사항목</td><td>필요 설비</td><td>검사 단위</td><td>단가</td><td>시간</td><td>개수</td><td>비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용량검사</td><td>충방전 시험기</td><td>팩</td><td>53,300(원/h)</td><td>8h</td><td>1EA</td><td>469,04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BMS</td><td>물리 검사</td><td>충방전 시험기</td><td>랙</td><td>-</td><td>-</td><td>1EA</td><td>최대 16,500,000원</td></tr>
<tr><td>SW 검증</td><td>-</td><td>랙</td><td>-</td><td>-</td><td>1EA</td><td>최대 27,000,000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고</td><td colspan="6">▸전기차 코나 전지 기준: 1팩 = 5모듈</td></tr>
</table>
* 출처 : 제주테크노파크 산업화센터(용량검사 비용),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(BMS 검사 비용)<br><br>○ESS용 랙은 '19년~'22년까지 연평균 14개의 모델이 인증</td></tr>
</table>

되고 있으므로 사용후전지로 제작한 재사용전지시스템 또한 유사한 모델 출시 경향으로 예측

<전기차 사용후전지 발생 및 회수 예측량>

| 구 분 | '23년 | '24년 | '25년 | '26년 | '27년 | '28년 | '29년 | '30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내 발생 예상량(A) | 5,914 | 13,826 | 31,696 | 42,092 | 56,966 | 71,842 | 89,639 | 107,520 |
| 센터 회수 예상량(B) | 637 | 1,489 | 3,412 | 4,532 | 6,133 | 7,735 | 9,651 | 11,576 |

* B = A X 20.0%(국내 말소율) X 76.9%(대구·경북·제주 제외 지자체 보급률) X 70.0%(실 수명 반영 등)
* 국내 발생 예상량 출처 :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('21. 11월)

<ESS용 전지 인증 모델 수>

|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산 | 11 | 22 | 5 | 6 | 44 |
| 해외 수입 | 0 | 3 | 5 | 4 | 12 |
| **합계** | **11** | **25** | **10** | **10** | **56** |

□ 직접비용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|
| 활동제목 | 표시 |
| 비용항목 | 표시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○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해당 제품에 스티커 형식의 표시를 함<br><br>○ 검사된 제품을 얼마나 분해하고 조립하여 최종 제품으로 만들지 출시 수량 등이 예측 불가하여 정량적 평가는 곤란하나 제품에 표시를 위한 스티커 인쇄는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|

□ 직접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업체 |
| 활동제목 | 재사용전지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재사용전지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한 후, 표시를 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|

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:

□ 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 |
| 활동제목 |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고, 해당 제품 관련 표시를 하므로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|

③정부 :

□ 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정부 |
| 활동제목 |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고,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에 표시를 하므로 시장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|

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□ 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영향집단명 | 일반 소비자 |
| 활동제목 |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|
| 편익항목 |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 |
| 근거설명 |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고, 제조업자가 관련 표시를 하므로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 |

| | |
|---|---|
| | 매할 수 있음 |